

[별첨 2]

‘14년도 로봇산업클러스터기반조성 내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주요 Q&A

2014. 10.

‘14년도 로봇산업클러스터기반조성 내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주요 Q&A

- ◆ 아래 Q&A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 담당자(053-940-9534)에게 반드시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관련

Q1. 창업 예정기업도 과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로봇 제품화 능력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판단합니다.

Q2. 이미 ‘12년도~13년도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를 지원받은 기업은 이 과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신청가능합니다.

단, 동일 로봇제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다른 로봇기술 제품화로 신청한 경우는 가능하나, 既지원한 유사과제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3.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중 최근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요 2년 미만 신생기업이나 예비창업기업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설립일로부터 ~ 과제신청시 제출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예비창업기업은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세금체납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신용평가는 서면 평가에서 판단합니다.

Q4. 대구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4.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제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성에 따라 대구지역 로봇산업 집적화를 통한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과제종료 1개월전('15.4.30)까지 대구지역 내 사무소(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를 개설하거나 현재 진흥원에서 건립 중인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인 경우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주소지 명기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 입증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Q5. 현재 건립중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입주심사에 떨어지게 되면 과제수행을 하지 못하나요?

A5. 입주심사에 떨어지더라도 A4.를 만족하면 수행 가능합니다.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심사에 떨어지더라도 과제종료 1개월전('15.4.30)까지 대구지역 내 사무소(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주소지 명기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 입증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습니다.

Q6. 로봇기술 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과제에서 기술보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A6.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과제는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제품화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기술보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이 과제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7. 로봇기술제품화지원과제의 지원요건에 로봇제품 “설계도면(제품기획서 포함)” 보유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설계도면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합니다.

설계도면 및 제품기획서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이중 하나만 있을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8.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입니다.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 지원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과제는 기술이전에 대한 양해각서 등의 체결 후 기술이전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사업화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술이전을 받았을 경우 로봇기술제품화지원과제로는 신청 가능합니다.

2. 과제 지원내용 관련

Q1.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R&D)은 신청가능한가요?

A1. 기술개발(R&D)성격 과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제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결과를 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Q2. 시제품제작을 몇 년전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 로봇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신규로 신청한다면 신청가능한가요?

A2. 신청 불가합니다.

국비로 지원받은 과제는 재신청 불가합니다.

Q3. 세부 지원내용 중 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성능평가를 필수로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A3. 이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제신청 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Q4. 공고문에 따르면 성능평가는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기관에서만 해야 하나요 ?

A4. 네. 그렇습니다.

단, 위의 기관이 아닌 그 외의 기관에서 성능평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5. 성능평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제 신청시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능평가를 외부에 위탁을 해야 하나요?

A5. 네. 위탁하여야 합니다.

성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공인시험평가기관에 준하는 시설장비,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공인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6. 과제결과물이 센서와 같은 부분품일 경우 인증으로 성능평가를 대체해도 되는 건가요?

A6. 본 과제의 성능평가 목적은 제시한 성능평가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인증 해당제품의 경우는 인증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인증 등 성능의 부분적인 인증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안전인증 등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전반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Q7.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시제품 제작을 반드시 외부에 위탁을 해야 하나요? 자체 제작할 경우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7. 반드시 위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 제작할 경우 직접비 내 재료구입비만 지원되며, 기업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과제수행 중 중간점검 및 과제종료 후 정산기관에서 확인합니다.

Q8. 이미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의 목적에 맞게 개량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네. 가능합니다.

사업화의 목적에 맞게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3. 과제 지원금 관련

Q1.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는 인건비 편성도 가능한가요?

A1.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로봇기술제품화지원과제, 로봇기술 이전을 위한 사업화검증지원과제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로봇기술제품화지원과제 지원내용 중 “콘텐츠제작” 지원의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Q2. 주관기관은 반드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제에서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모두 가능하며, 합하여 과제비의 20% 이상이면 됩니다.

Q3. 과제수행완료 후 별도의 정산절차가 필요한가요?

A3. 네. 필요합니다.

이 과제의 과제비는 주관기관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산은 국비 및 민간부담금(현금)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관기관은 “과제비사용실적보고서”를 사업기간(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Q4.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A4. 수행기관은 과제종료 후 과제비 사용 잔액 중 국비지원금 및 발생 이자에 대하여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과제비에 포함하여 사용가능합니다.

Q5. 과제계획서에 기재된 정산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5. 과제신청시 정산수수료는 총 과제비 중 현금(국비+민간부담금)의 1% 내외로 산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제 종료 후 잔액은 과제 정산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Q6. 공고문에 과제 협약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까?

A6. 네.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의 협약금액을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비지원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위한 것입니다.

※ 대략 국비 50,000천원의 경우 250천원 내외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7. 과제비에서 여비 및 사무용품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A7. 집행 불가합니다.

이 과제의 과제비는 로봇제품제작에 필요한 직접비만 집행 가능하며,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여비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Q8. 환수금 반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해 환수금액 및 반납에 필요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관기관에서는 납부기한 내에 지정계좌로 안내받은 환수금액을 반납하시고 송금확인증을 진흥원으로 보내주시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4. 과제평가 관련

Q1. 선정평가 전 현장점검도 실시하나요?

A1. 네.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Q2.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서면평가		· 신청자격 검토 및 채무불이행 등 기업의 신용상태 평가	· 과제신청전 기업에서 자체 검토하여 사전지원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 <사전지원제외 평가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
현장점검 <필요시>		· 필요시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개발 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을 조사	-
선정 평가	발표평가	·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수행능력 평가	· 과제발표 10~15분 · 질의응답 10분
	지원금 심의	·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지원금 심의	

Q3.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A3. 로봇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화전문가 Pool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Q4. 공고문의 우대기준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4. 우대기준에 타당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신청기관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우대기준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Q5.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꼭 하여야 하나요?

A5. 네.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표평가시 사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5. 기타

Q1. 만약,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1. 국비지원금은 수행기관의 민간현금 입금확인 후 → 협약 진행 →
협약 후 50% 지급 → 중간점검 후 50% 지급 (※ 중간점검시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급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